

제407회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6월22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88)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27)
3.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45)
4.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1)
5.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5)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5)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6)
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7)
9.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6)
1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481)
11.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5)
1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3)
1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7)
1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7)
1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8)
1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5)
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2)
18.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4)
1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1)
2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9)
2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2)
2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3)
2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8)
24. 한우산업기본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2)
25.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32)
26. 농어업회의소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7)
27. 농어업회의소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3)
28. 농어업회의소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9)

29. 농어업회의소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43)
30. 농림어업회의소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4)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0)
3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9)
3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8)
3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87)
3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1)
36.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2)
3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4)
3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4)
3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4)
4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8)
4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2)

상정된 안건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88) 3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27) 3
3.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45) 3
4.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1) 3
5.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5) 3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5) 3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6) 3
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7) 3
9.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6) 3
1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481) 3
11.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5) 3
1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3) 3
1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7) 3
1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7) 3
1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8) 3
1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5) 3
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2) 3
18.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4) 3
1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1) 3
2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9) 3
2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2) 3
2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3) 3
2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8) 4
24. 한우산업기본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2) 4

25.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32)	4
26. 농어업회의소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7)	4
27. 농어업회의소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3)	4
28. 농어업회의소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9)	4
29. 농어업회의소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43)	4
30. 농림어업회의소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4)	4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0)	4
3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9)	4
3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8)	4
3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87)	4
3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1)	4
36.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2)	4
3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4)	4
3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4)	4
3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4)	4
4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8)	4
4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2)	4

(10시11분 개의)

○소위원장 여기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88)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27)
3.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445)
4.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0161)
5.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0405)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975)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8406)
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7)
9.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6)

1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481)
11.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575)
1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933)
1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977)
1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757)
1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588)
1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0935)
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2)
18.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464)
1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1)
2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319)
2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502)
2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993)

2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8)

24. 한우산업기본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2)

25.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32)

26. 농어업회의소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7)

27. 농어업회의소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3)

28. 농어업회의소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9)

29. 농어업회의소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43)

30. 농림어업회의소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4)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0)

3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9)

3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8)

3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87)

3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1)

36.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2)

3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4)

3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4)

3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4)

4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8)

4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2)

○소위원장 **이기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1항까지 모두 4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의 2페이지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업·농촌의 양성평등 증진정책 수립·시행 의무 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농촌에서의 핵심 노동력을 담당하는 여성인구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데 반해 농업·농촌에서 사회적 인식, 가사노동의 분배, 자산의 소유 형태, 사회적 활동 참여 등 여러 부문에서 여성의 권리와 지위 보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에서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성별 격차 해소 및 양성평등 확대에 관한 사항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목적,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조항에서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다소 소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종합공부 등 타 기관 보유 정보의 요청 근거, 타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근거, 정보취약계층 시스템 운영 업무 위탁의 근거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제1항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조항은 현재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체계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시스템 구축 시 농업인은 개인별 선제적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증빙서류

의 제출 없이도 원스톱으로 보조금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업무 담당자는 보조금 수급자격 자동판정 및 중복지급, 부적정 수급 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제2항 타 기관 보유 정보의 요청 근거 조항은 농식품부장관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종합공부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보유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의 목적 및 개인정보의 요청 목적 등을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우 또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업무와 정보를 보다 구체화한 후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3항 타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조항은 동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데 농식품부는 개인정보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제1항의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정보취약계층 지원 등의 조항은 고령농 등 정보취약계층의 원활한 시스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일부 인용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2쪽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업·농촌의 양성평등 증진 정책 수립·시행 의무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4쪽의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정부 측의 수정의견대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랑 협의를 해서 정부 측 수정의견을 만든 상황입니다. 아무튼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수집·관리하는 정보를 업무 목적의 범위 내에서 분명히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한 거기 때문에 정부 측 수정의견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정부 측 의견 들었고 정부 측 수정의견도 소개를 했는데요.

질의가 있으시거나 의견 개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차관님, 양성평등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는 것과 관련해서 농식품부는 원안 동의하는 입장인데 법무부가 이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건 어떻게 보면 법의 중복성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가 의견을 해 준 거고요, 이게 절대 안 된다 그런 정도의 반대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안호영 위원 그렇다면 이게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부 측 농식품부 의견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 큰 틀에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다루는 것 업무 범위로 국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업무 범위 외에 다른 용도로 쓰인 거에 대한 제재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제재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법에 특별하게 규정이 있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이원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요점 위주로 주요 사항만 빠르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소위 심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 삭제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농특위의 존속기한을 법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존속기한을 삭제하거나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특위는 내년 4월 24일까지만 존속하게 되어 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향후 농특위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위원회의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할 예정으로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 역시 존속기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다만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기보다는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취지로 수정하되 그 존속기한을 2029년 4월 24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특위의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농특위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 12명 이내의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와 12명 이내의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거나 지역개발, 교육, 보육, 보건복지 및 문화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 지역개발·교육·보육·보건복지 및 문화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구체화할 경우 전문적 의견에 기반한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두 개정안에 동의하되 개정안의 내용 중 보육은 복지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고, 그리고 법안의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

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행일 및 적용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식품부는 시행일에 관해서는 위원회 존속기한이 24년 4월 24일까지이므로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회용 의원님 안과 같이 적용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여기구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먼저 12쪽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 삭제 또는 연장은 정부 측 수정의견처럼 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계부처인 행안부와 협의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없겠다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14쪽입니다.

농특위의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정부 측 수정의견대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16쪽의 시행일 및 적용례 같은 경우에도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고 적용례는 현재 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해서 현재의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여기구 정부 측 의견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차관님, 12쪽에 두 의원님들 안이 한 분은 존속기한 삭제고 한 분은 5년간 연장인데 지금 이 위원회를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장이든 삭제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삭제를 하지 않고 연장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행정 위원회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런데 그 법률에서는 존속기한을 반드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존속기한은 5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

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위원회와 관련된 행정부 내의 총괄부처인 행안부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 규정에 대해서는 차관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위원회라고 한다면 삭제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있을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5년간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5년 지난 다음에 또 연장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없어질 수도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현재 상태에서 농특위의 존재 필요성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황의 변화나 아니면 대통령님의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기한을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최춘식 위원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저도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물론 행정 내부적으로 가능하면 위원회의 존치를 중간에 검토해서 존립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자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기본 취지가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한 대응 또 장기적·안정적 논의 이런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여서 농어촌의 소멸위기 문제가 5년 이내에 해소될 것이냐, 그것을 중간에 점검하고 존치 여부를 또 따져 볼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관련되어서 행정부 내에서 나름대로 중간에 행안부에서 위원회가 과다 설치되는 문제를 적절히 제어하자 하는 취지가 있지만 이 부분을 거기에다 넣고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더더군다나 아까 우리 차관 답변이 이후에 들어오는 정권에서 대통령의 입지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은 행정 내부적인 규범이면, 시행령이나 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입

장이 가능하지만 법률로 규정해서 운영되는 내용을 가지고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려고 만드는 건데 그런 정부 내부적인 내용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차제에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특히 농어촌 소멸위기나 농어민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장 개방 때문에 나오고 있는 변화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하는 취지에서 보면 저는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이것을 뭐 꼭 특별위원회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명칭까지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 저는 이것은 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존속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저희들도 아무튼 이번에 대통령 위원회를……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전체적으로 21개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정비해서 8개만 남겨 놓고 13개는 정비를 한 상황인데 농특위가 아무튼 정비되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남을 필요가 있다, 계속 존속될 필요가 있다 그런 중요성을 저희들도 정부 내에서 무척 강하게 주장했었고요.

다만 농특위는 일단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소멸 문제가, 5년 안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멸에 대응하는 부분은 각 부처에서 일을 하고 다만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는 그 이슈와 관련되어서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측 수정의견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정희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차관님, 보육이 복지에 포함되는 개념이어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적고 이랬는데 정부 측 수정의견을 보면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만들 때야 보육이 복지에 포함되는 개념이라서 제외했다고 하지만 보건복지 이러면 나중에 해석할 때 보육 전문가들은 빠지게 되지 않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 전문가가 빠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사실은 보육 문제를 작지 않은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육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아마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 규정대로 두면 보육 전문가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볼 수 없을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정희용 위원 보육 전문가를 넣고자 하는데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서 참여를 못 시킬 수도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만약에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다면 보육을 보건복지와 병행을 하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보육을 다시 넣든지 아니면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함한다 해서 딱 이 분야만 한정하지 말고 ‘등’을 넣어서 해석의 공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 부분은 저희로서도 수용 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 저도 조금, 방금 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좀 주의랄까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특위에 지역개발, 교육, 보육, 보건복지 및 문화, 과학기술 분야까지 전문가를 포괄하겠다는 이렇게 돼 있는데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지방 소멸이 되고 있는 어떤 농촌 문제를 복합적으로 접근해 보자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농업과 어업의 고유의 어떤 정책과 성과를 내는 것 이것이 조금 소홀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업 대표가 1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농정, 농어촌 분야, 식품 분야, 환경 분야, 어업 분야, 산림 분야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이것도 추가가 될 텐데 농특위 고유의 업무가 농업과 어업의 어떤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고 또 거기의 성과를 내는 것인데 농촌의 지방 소멸을 막아 낸다는 측면에서 저도 이해는 되지만 조금 이 부분은 운영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고유의 성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혹시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것을 운영하시면서 정부 차원에서 잘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속기간은 2029년 4월 24일까지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5년……

○윤준병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대통령의 집권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법률이 현재 존재하는, 그러니까 행정기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돼 있고,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는 이 법률이 존재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드린 그런 말씀……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존속기한을 없애는 방법, 내용도 취지에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농식품부 입장이 이것을 성격상 대통령 자문기구이니 대통령과 연계돼 있는 내용을 염두에 두어서 존속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자문기구이니 대통령의 의지나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의견이었잖아요.

저는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면,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 5월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윤준병 위원 5월이면 5월 해서, 2027년도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그 시기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자문기구를 둘 것인지 안 둘 건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도록 2027년 12월 31일까지 임기가 끝나고 다음 정권에서 이 내용에 대한 입장을 한번 조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히려 그냥 기계적인 5년보다 정권하고 일치시키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러니까 정부조직이나 위원회에 관한 논의가 사실은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규칙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위원님.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임기와 딱 일치시켜 버리면 아마 실제 그 논의가 그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준병 위원 5월 달이니깐 12월 연말까지 하면 정기회도 있고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잖아요, 오히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아니,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그 부분이 부처의 뜻대로 내지는 저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부분이라서 그냥 29년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어기구 또 드릴 말씀 있어요?

○안호영 위원 예.

○소위원장 어기구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안호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기본적으로는 농어촌특별위원회는 계속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행정위원회법에 관련된 일반법에 따라서 그 최대 존속기간이 5년이라는 시한이 있어서, 또 행안부랑 어차피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아까 정부 측 의견대로 29년 4월 24일로 정리해서 넘어가고 또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이게 지금 농림부 마음대로 존속기간을 삭제하고 그러지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에 의해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러기는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5년 초과 불가하고 존속기간 명시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농림부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5년을 정확히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부터 바꿔야 농림부가 하지 않을까……

다른 위원회들도 많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면 농림부가 제안한 대로 존속기한을 2029년 4월 24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다음에 농특위는 그야말로 농어촌을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여러 가지 여기 쪽쪽 학계든 관련 분야에서 집어넣은 분야들이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대로 유념해서 잘 해 주시고요.

여기 ‘분야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소위원장 어기구 이것 두 가지만 고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도를 좀 내지요. 오늘 우리 숙제들이 많으니까요.

다음은 제6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19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보고 대상의 명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 보고 대상을 세분화해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1호에서는 농촌만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농식품부장관, 어촌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해수부장관, 그 외에 해당하는 농어촌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양 부처 장관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가 농촌과 어촌 모두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보고체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빈집실태파악 및 빈집정비계획 보고 시 누락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제3호 ‘그 외에 해당하는 농어촌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의미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제1호에 따른 농촌과 제2호에 따른 어촌 모두를 관할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제2호 ‘어촌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1호와 마찬가지로 ‘어촌만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정부 측 수정의견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빈집정비계획 수립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빈집 정비하자, 이것 절실하게 꼭 뒷받침돼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 농식품부에서 이런 보고를 받으면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실행을 시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빈집정비계획을 각 지자체별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현재 대략 한 30% 정도의 지자체들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빈집정비계획이 올라오면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 빈집이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들을 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많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보고를 받으면 보고받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농식품부가 지원대책을 제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액션이 뒤따라야 이게 의미가 있는 보고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빈집이 가장 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런 빈집을 정비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예산 사업을 몇 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우선적으로 좀 예산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저는 지자체에서 정비계획이 보고되면 국비지원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매칭하는 내용을 제대로 해서 차기 연도 예산에 뒷받침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액션이 뒤따라야 농어촌의 빈집정비계획이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는 것이지 규정에다가 정비계획 보고만 하라고 하고 이것을 근거로 하는 구체적인 액션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보고거든요. 오히려 행정력만 낭비를 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제대로 정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윤준병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측 의견대로 ‘어촌’을 ‘어촌만’을 또 ‘그 외에 해당하는 농어촌’을 ‘제1호에 따른 농촌과 제2호에 따른 어촌 모두’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7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심사자료 23페이지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우선지원 규정에 농촌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농촌 청년에게도 농촌 여성과 같은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우선지원 규정을 창업·경영 기반이 취약한 농촌 청년에게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농촌융복합산업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자구 수정과 관련해서 이 법의 다른 조항에서 청년보다는 여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청년·여성’을 ‘여성·청년’으로 이렇게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심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 대상에 청년의 복지 증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의 하나로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 증진사업

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용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대상에 청년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청년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원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차관님, 지금 청년을 추가하는 사항인데 청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령으로 볼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연령으로 저희는 보통……

○최춘식 위원 그러면 몇 세까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40세 미만.

○최춘식 위원 40세?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근데 통상 지금 통용되고 있는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보지 않나요, 45세 이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게 법에 따라 다른데요 청년기본법에서는 제 기억에 35세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통 청년 그러면 40세. 그런데 저희 농업계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후계농이 있는데 후계농은 제 기억에 50세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조금 맥락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렇게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떤 법에 따른 연령 규정을 여기서 할 건지 실무적으로 바로 검토를 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예, 이게 의원안으로 나와 있으면 차관님, 의원입법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검토하실 때 이게 좀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이게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규정에 가깝다 보니 제가 좀 소홀히 했

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8항은 보류했다가 9항부터 논의하고 정리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이상 2건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심사자료 2권입니다. 2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심사 경과입니다.

2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법안심사소위 2월 22일에서 한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는 개정안의 내용 중 농업투입재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과 국제농업협력사업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 지원 근거와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 시 국내 농림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현행법에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명령 조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반입명령 결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제기된 이러한 의견들과 관련해서 농식품부는 몇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 시 국내 농림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안 제24조제2항에 후단을 신설해서 국내 반입 지원 시 해당 농림·산림자원의 국내 자금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제33조에 제8항을 신설해서 반입명령 사유가 없어졌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을 해제하도록 하는 추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명령

조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비상시 반입명령 조건을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로 구체화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입명령 결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33조 제3항을 신설해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을 명하는 경우 미리 해당 자원의 국내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해서 농업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을 위원님들의 말씀 취지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 수정의견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한 차례 논의한 바가 있고 또 정부가 수정의견을 냈는데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동의합니다.

○안호영 위원 정부 측과 법안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충분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 의견 수정안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최춘식 위원 저는 2월 달에 여기에 대한 의견도 냈는데 그대로 다 내용이 추가됐고 보완됐다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특별한 이의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심사자료 32페이지입니다.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실시 및 그 결과의 국회 제출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은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해당 농약이 사람 등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 품목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농약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은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조·공급 등을 제한하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검역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메틸브로마이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국정감사 등에서 메틸브로마이드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발의될 때까지 농진청이 메틸브로마이드의 안전성 등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정부 측의 조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사람 등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에 동의하되 개정안에서 농약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사유에서 해당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를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이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기타 일부 누락되거나 인용조문에 좀 오류가 있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농약 품목 재등록 시 시험성적서의 제출 면제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농약 제조업자가 농약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농식품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품목 등록 당시 제출하였

던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이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기재출하였던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농약의 독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인데 기재출하였던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하는 것은 현행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고독성 농약인 메틸브로마이드 등의 농약 관리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농약 제조업자가 이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행정청의 문서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인바 행정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농약 제조업자가 시험성적서의 중복 제출을 요청받는 등의 행정 불편과 재정 부담을 감수하게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시험성적서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는 극히 드물고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를 행정청의 시험성적서 보관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으므로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 등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국제기구 등에 의해서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혀진 농약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비상설 회의체로의 전환입니다.

현행법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는 분쟁 사건마다 구성하도록 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농약관리법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일부 법안을 비상설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일괄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한 취지에 맞추어 농약피해분쟁조정 위원회도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금년 2월 농약피해분쟁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6월 현재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도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며 다만 정부가 기재출한 일괄 정비안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몇 가지 체계·자구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운영 주체를 농식품부장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안 제23조의5제4항과 같이 조정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을 일괄적으로 삭제하기보다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위원 임기도 만료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조정위원회는 분쟁 사건마다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 사건마다 각각의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동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현행법은 분쟁조정 신청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분쟁조정의 접수, 수수료 부과를 조정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조정위원회뿐 아니라 농식품부장관도 분쟁조정 신청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분쟁조정의 접수 및 수수료 부과는 조정위원회 업무가 아닌 농식품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에 관한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의 성질상 조정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 처리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 또는 종결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안 작성기간 및 조정의 종결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등 분쟁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입법례를 보면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안의 작성기간, 조정의 종결에 관한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도 이러한 입법례와 같이 분쟁조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도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정의 거부 사유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분쟁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추가적으로 규정할 내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유사 입법례도 조정의 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쟁조정 중인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위성곤 의원님 안은 조정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고 김승남 의원님 안은 조정을 종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타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일단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도록 하였다가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조정을 종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서삼석 의원님 안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여기구 의원님 안은 23년 1월 1일부터, 위성곤·김승남 의원님 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정비기간을 고려해서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여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32쪽입니다.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수정안대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은 34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42쪽입니다.

농약 품목 재등록 시 시험성적서의 제출 면제 사유를 제한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시험성적서가 없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 행정청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44쪽에 있는 정부 측 수정의견대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46쪽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비상설 회의체로의 전환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47쪽의 표 안에 있는 내용과 같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운영할 수 있는 상설 회의체로 하고 그다음에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48쪽의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은 놔두되 위원회가 해산되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조정위원회를 분쟁 사건마다 구성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49쪽 하단부에 있는 조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장관이 분쟁조정 신청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56쪽은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인데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우선 첫 번째로 조정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문구는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분쟁조정 중인 사건에 대해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했다가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이 되면 조정을 종결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64쪽입니다.

64쪽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차관님,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한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게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상설 회의체라고는 해도 사실은 운영이 좀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농약피해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해체를 할 수 있고요.

○안호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이 되면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위원을 위촉해서 조정 사건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안호영 위원 그 사건이 종결이 되면 다시 해산하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구성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원칙적으로 그런데 의무적으로 해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위원의 임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 운영하고 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차관님, 44쪽 정부 측 의견에서 시험성적서가 확인되지 않을 때 면제하는 규정을 가지고 다시 의견을 주셨는데요.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있는 것은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나 유럽연합의 검증 결과를 인용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지요? 여기 취급 요령을 다 그대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취급 요령을 따르다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이것은 결국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내외의 연구분석 보고서가 기본

적인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장에서의 의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취급 요령대로 썼는데도 어떤 해가 발생했다,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 그런 식의 의견도 현장에서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질병이나 아니면 건강 관련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최춘식 위원 농약회사에서 제시하는 취급 요령이라든가 사용 요령에 대한 것을 다 따를 수는 없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따르더라도 해가 생기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춘식 위원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우려잖아요, 우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우려에 대한 예측을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의사, 그러니까 기본적인 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행정청으로서 농진청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농진청이 자의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나 현장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최춘식 위원 좀 더 명확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소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저도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과 같은 지적인데요.

지금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실은 이 내용이 9조(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의 반려하거나 보완명령을 명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규정 중의 하나잖아요, 이게?

그런데 농진청장이 신청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명할 때는 농진청장이 이런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해서 통보하고 보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내용 속에서도 그 정도의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면제하지 않고 제출을 받으면서 포괄적으로 브로드(broad)하게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지금 9조에 해당되는 내용과 연계해서 이 내용의 사유를 구체화하고 그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사유로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 줘야지, 9조에서는 농진청장으로 하여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보완을 하라고 해 놓고 이 규정에서 면제하면서는 그대로 이렇게 아무 한계나 명확한 절차 없이 주체도 명확하지 않고 절차도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추상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이것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 보완해서 입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완 내용을 좀 만들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이게 사실은 최초 등록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재등록을 하는 단계에서 시험성적서를 면제해주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윤준병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지금 9조 3항인가요? 3항과 연동되는 내용으로 판단되면 9조 3항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했던 품목 이렇게 명시하든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예를 들면 하단의 경우에, 후단의 경우에는 국제기구가 주체잖아요. 판단,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혀진 구체적인 내용이 그 하나로 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것은 이제……

○윤준병 위원 그러면 앞의 내용도 예를 들면 농진청장이 이렇게 해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 내용·품목 이렇게 정하든지, 완결되는 내용으로 하나가 성안이 돼야 규범으로서 이게 예측 가능하고 인식이 가능한데 이 내용만 해 가지고는 우리 수범자들이 이 내용의 실체가 뭔지를 알 길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일단 법 조문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완결성을 갖도록 저희들이 수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긴 한데 최초 등록이 아니라 재등록을 하는 단계에서 시험성적서를 면제해 주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면제를 해 주는데 예외적으로 면제해 주

지 않는 경우를 규율을 하다 보니까 조금 추상적인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면제 이전에, 예를 들면 품목이라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받은 경우’ 하든지,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완결성이 있는 내용으로 문구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은 좀 성안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그럼 이 농약관리법은 법률안을 좀 수정 보완해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이상 2건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66페이지입니다.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식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 상황 등을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병해충에 관한 예찰·방제 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각각 운영하고 있어 병해충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각 기관에서 개별 운영 중인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자구와 관련해서 ‘식물병해충’을 ‘병해충’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구근’을 ‘알뿌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구근을 알뿌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구근이나 알뿌리 모두 둥근 모양이나 덩어리 모양으로 된 줄기나 뿌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의미는 같습니다. 다만 한자식 표현인 구근을 우리 말 표현인 알뿌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66쪽입니다.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구근을 알뿌리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소위 심사자료 3권 2페이지입니다.

법 개정 경과입니다.

행정기관 위원회법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22년 6월 기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총 636개로 위원회의 남설, 운영실적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 자체 정비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년 5월 말 현재 일괄정비법률안 입법 추진현황을 보면 32개 일괄정비법안 중에서 현재까지 3개가 국회를 통과했고, 기재부, 외교부, 행안부 관련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행안, 금융위 등 7개 관련해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농식품부 소관 위원회는 현재 대통령 소속 1개—농특위입니다—총리 소속 1개, 농식품부 소속 24개를 포함해서 총 26개가 있는데 개정안

은 이 중 6개의 위원회를 3개로 통합하고 2개의 위원회를 단순 폐지하며 12개 위원회는 비상설회의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음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진청 소관 위원회는 총 3개가 있는데 이 중 2개 위원회를 1개로 통합하려는 것이고 산림청은 총 7개 중 4개의 위원회를 2개로 통합하려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식품부 소관 위원회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서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개정하고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수의사법 및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사법 시행령에서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 두 위원회 간 목적과 기능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의사국가시험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접수되는 등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의 개정사항에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분과위원회 심의의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의 심의 간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림종자위원회와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통합입니다.

개정안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농림종자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품종보호권의 보호에 관한 자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제정을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을 담고 있고,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 기능을 품종보호심판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하므로 종자위원회의 목적과 취지를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종자 관련 분야가 소홀하게 다뤄질 우려도 있으므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두는 등 기존 농림종자위원회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통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총리 소속의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에 따른 대통령 소속의 농특위에서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어업인 삶의 질 법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시 농특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고 농특위법에서는 농특위의 심의사항에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협의 또는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고 농특위 위원을 기존의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농특위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과 관련한 기능을 포함하는 포괄적 측면이 있고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기능을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특위로 이관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부처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이 보다 수월해지는 등 관련 정책 심의·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농업기계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가 목표 설정과 제도 발전, 농업기계화 육

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인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는 최근 3년간 출석 2회, 서면 2회 등 총 네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합니다.

위원회의 폐지로 향후 관련 정책 추진 및 산업분야의 위축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축산법에 따른 축산발전계획 및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인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된 송아지 기준가격 심의,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심의 규정을 이 법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축산발전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세 차례의 서면회의를 개최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축산 분야의 민관 소통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해서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송아지생산안정가격의 기준가격 심의, 국가축산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비상설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각 개별법에서 기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12개의 위원회를 농식품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화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12개 위원회에 관한 간단한 개정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위원회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와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통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역특화작목법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농촌진흥법에 따

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특화작목법에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심의를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개정하고 농촌진흥법에서는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다른 법령에서 농촌진흥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는 전반적인 농촌진흥청의 정책 및 사업 등의 심의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농촌진흥청의 정책 중 일부인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사항의 심의를 포함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산림청 소관 위원회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산림교육심의위원회와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통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산림교육법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산림복지법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산림교육법에서는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시 산림복지법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고 산림복지법에서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한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을 현행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 심의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두 위원회는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로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해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개정안은 효율적인 정비방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림교육 심의사항 중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등의 경우 서류검토와 현장조사에 통상 1분기가 소요되는 등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일시 심의가 어려워 업무 연속성이 요구되므로 분과위원회 구성 시 산림교육 관련 전문가를 적절히 구성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와 탄소흡수원증진

위원회의 통합입니다.

개정안은 목재 이용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위원회를 폐지하고 탄소흡수원법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서 현행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목재 이용법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시에는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탄소흡수원법에서는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사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사항에 추가 규정하고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수정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목재 이용법에서는 개정안 제14조 ‘인증’과 ‘인정’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정부는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개정안과 같이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으로만 추가 규정하는 것은 지속적인 목재 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목재이용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되 목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서 관련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고 이 법 시행 당시 폐지되는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새롭게 통합되는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보는 간주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수석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4쪽에 보시면 저희 농식품부 소관 위원회의 정비방안이 요약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마련한 이 개편안대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 직속의 농특위와 총리가 위원장인 삶의질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을 할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위와 종자위는 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합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수의사시험위원회와 가축방역위원회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로 통합을 할 거구요.

그다음에 맨 밑의 칸에 보시면 품종보호심판위, 재해보험위, 동물복지위, 식품산업위 등 6개 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가운데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민간 참여가 저조한 14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농식품부가 국별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별로 구성하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부에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내용 보면 통합하면서 위원이 30인인데 50인으로 늘리고, 나는 이런 운영이 바람직한 운영인지는 모르겠어요. 실제 30인의 위원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운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통합하면서 50인으로 늘린다. 이게 맞는지, 그게 현실적으로 진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방향인지.

또 통합하다 보니까 저항이 있으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기본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위원회가 예전에 있던 기능을 제대로 담으려면 인적 구성이 제대로 담겨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 그냥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담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내실 있는 운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50인으로 늘리는 게 나름대로 실제

내실 있는 운영을 염두에 둔 숫자인지 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편에서는 운영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또 특별위원회 두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접근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일단 30인, 50인 말씀은 아마 농특위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윤준병 위원 뒤에도 또 있어요, 10에서 30인을 30인에서 50인까지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조금 말씀을 드리면 농특위랑 삶의질위원회의 그 기능상의 차이 때문에 정부위원의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질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부위원이 한 15명, 왜냐하면 농촌지역의 삶의 질과 관련된 기능이 각 부처에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교육·교통·의료 그런 식으로 각 부처의 모든 기능이 대부분 다 관련이 있다 보니까 삶의질위원회의 정부위원이 15명이나 됩니다, 각 부처 장관님이.

그러다 보니까, 농특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각 부처 장관님이 5명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이 합쳐지다 보니까 각 정부부처의 장관님들이 농특위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게 돼서 농특위 위원이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그런 이유로 확대가 됐습니다, 정부위원이 한 10명 이상이 늘어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농특위 위원의 숫자는 30명에서 50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느냐가 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너무 유명무실한 법적 위원회가 많다 보니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하자는 차원이고.

대신에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외부의 전문가나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면 그것들은 충분히, 신축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라라는 식으로 행안부에서 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향에 따라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작업을 했고.

아마도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게 위원회 1년에 몇 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관련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 않

습니까. 아마 그런 일은 훨씬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부가 하려는 부분이 이게 효율성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이 뭐라 그럴까, 좀 의심스럽다 내지는 좀 불명확하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들이 실제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분과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분과위원회 같은 것도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기본적인 방향을 정한 상태입니다. 꼭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구요.

○소위원장 어기구 다음 안호영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여러 개 위원회가 있을 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를 갖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유의미한 면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행정을 해 나갈 때 있어서 위원회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각계의 의견들이 정부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그런 다양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정부 정책이 좀 더 현실에 부합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도 바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측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위원회의 위원들이 역할을 못 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서포트해야 되는 우리 정부부처의 관계 공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점에서도 달리 봐야 될 점이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 없이 하게 되면 이걸 줄여 가지고 통폐합을 했는데 또 안 되고 나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줄여 놓으면 소통의 측면들이 소홀하게 되는 그런 면들도 있으리라고 봐요. 또 실제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을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각 단체들이 아마 통폐합에 대해서, 폐지하는 거나 혹은 합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들도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예를 들어서 상설 위원회로 돼 있는 것을 비상설 위원회로 바꾸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대충 보니까 일종의 심의회를 거치거나 판단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으면 그것은 어차피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더라도 사안이 생기면 그때 소집하여서 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딱히 그런 건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예 그냥 없애 버리면 빨리 소집해야 될 사안이 달리 없는데 그야말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비상설 위원회로 해 났을 때 그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이것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이것은 비상설로 해 놓으면 사실상 운영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도 지금 축산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상설로 해 놓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뭔가 신청이 들어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되겠지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판단에 대해서는, 이 법안을 지금 여기에서 오늘 바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의견도 조금 더 들어보고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이원택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차관님, 10페이지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예상 인원은 몇 명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구성 위원이 제 기억에 한 40명이 좀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원택 위원 이걸 종자위원회와 통합을 하게 되면 구성 관계는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일단 농림과학기술위원회는 23명이고요 종자위원회는 11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 두 위원회를 합쳐서 한 25~30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원택 위원 저도 조금 약간……

이렇게 가급적 통합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랄까, 이게 효율성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걸 높이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러나 행정을 추진하는 데 어떤 전문가들이나 또는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좀 좁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특히 종자산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이것 통합을 하면서 23명, 11명 이걸 합치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한 30명……

○**이원택 위원** 33명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런데 그걸 25~30명 사이로 조정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촉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대목들이 아시아 종자산업을 키워 가겠다 이렇게 장관께서도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이것 추진체계나 지원체계가 좀 더 보장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쪽에 통폐합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습니다.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쪽 업계라든가 민간 쪽의 의견수렴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지요? 정부 판단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웬만큼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나름 의견수렴은 한 상태고요, 뭐 그렇게 크게…… 수의사회에서 국가시험위원회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의견은 있었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 아무튼 그러면서 그렇게 큰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통폐합과 관련된 부분을, 그러니까 일단 아까 이원택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그 관련되는 부분과 관련되는 업무의 비중이나 중요성이 낮아진다는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그 관련되는 업계와의 소통이 줄어들다는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물론 어찌면, 예를 들면 종자위원회 그러면 종자업계는 그것 있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은 유사 기능 같은 경우에 통폐합을 하면……

과학기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위상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자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합을 해서 같이 논의가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의 위상도 그렇고 논의되는 내용도 그렇고 아마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택 위원** 활동 실적으로 보면 별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활동 실적으로 보면 별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각종 위원회는 이제 집행부 측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활성화되느냐 정체되느냐 퇴보하느냐는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듣고 청취하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느냐, 이런 기본적으로 알겠는데 그런 우려가 저도 좀 생겨서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25페이지에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몇 명으로 구성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이것은 특별히, 저희들은 그 인원이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과정이고요. 정책자문위원회 그러면 대략 한 20~30인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조금 애매한 건 다 이리로 집어 넣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하게 요구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 위원회에서, 정책적인 합목적성이나 효율성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는 아마 대부분 이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원택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 농기계산업 기계화 촉진을 하는 게 필요했지요. 그런데 사실 농기계가 아마 지금 인공지능·자율주행 농기계 이런 걸로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AI 농기계로 어떻게 진화를 시켜 갈 거냐라는 것이고 그 진화 정도에 따라서, 지금 우리 농기계를 전 세계에 수출해 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이게……

모르겠어요. 이 위원회가 보니까 실적은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실적은 별로 없는데 향후 그런 AI 농기계로 진화해 가는 데 필요한 정책적 자문이나 이런 것은 정책자문위원회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지금 차관님이 보시는데 저는 약간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28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이것도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축산발전위원회도 사실 기존에 실적은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거의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런데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어

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가……

이게 국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그런 개념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원택 위원** 이게 통합적인 농식품부의 정책 자문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농식품부 전체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이원택 위원** 아, 그러면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지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농식품부 전체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별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를 국별 정책자문위원회, 농식품부 전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이원택 위원** 그래서 그 정책자문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장의 목소리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의 의견이나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농식품부의 의견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또 다른 루트로 사전에 취합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계획이랄까 이런 게 좀 분명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일단 저희들이 위원회의 통폐합과 관련된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이 주제 이렇게 하지요. 저도 정부 위원회에서 근무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위원회가 한 50명 이상 되면 회의가 안 돼요. 아까 윤준병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국회도 예결위에 50명 모아 놓으면 이게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위를 만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위원회 통폐합 다 좋은데 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특위를 만들 것인지 분과위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의제별

위원회를 만들 것인지…… 50명 전체를 가지고 운영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잘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정부 측에서 잘 설명해 드리고, 이 의제는 다음 소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소위원장 어기구** 그렇게 하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위원장님, 이것 처리하시고 청년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예, 말씀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처리하시고……

○**소위원장 어기구** 이건 보류입니다, 보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청년과 관련해서 지금 청년의 나이,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단어로 구체화하고 있는 게 청년기본법이고요.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에서는 청년농어업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청년농어업인을 40세 미만인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측면은 그렇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보통 청년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법들이 여러 법에서 규정화가 됐는데, 삶의 질 법이라든지 융복합법이라든지 조금 전의 농특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정책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법에서 청년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규정화가 됐는데 실제 어떤 법에 따른 청년, 몇 세 이하인 청년 이런 식으로 법에 구체화가 된 경우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법에 따른 청년 내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청년에게 지원을 해 줄 때 청년의 범위는 보통 그 사업시행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법에서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따른 청년 이렇게 꼭 특정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은 그 사업시행지침에서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법에서는 그냥 청년이라고만 하고 넘어가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윤준병 위원 그런가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각 법별로 지원하는 내용에 청년을 정의하고 청년의 연령 한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잖아요, 각 개별법에서.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청년의 범위가 명확지 않은데 지원 근거를 두거나 이런 내용은 사실은 옳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에 연령이 정해져 있는, 법에 연령과 관련된 부분은 청년기본법이랑 후계농어업인 육성법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됐든 청년을 청년기본법에서는 34세 이하 이렇게 하고 있고 후계농어업인 육성법에서는 40세 이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준병 위원 또 45세를 기준으로 한 데도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다른 법에서는……

○윤준병 위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 법의 취지에서 청년을 연령적으로 한계를 정한다면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내용이 적정하면 그 내용을 법률 인용한 내용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이 법에서의 청년은 몇 세 이하를 청년을 한다고 정하든지 그걸 근거를 취야 의미가 있지요. 청년은 UN에서 정하면 75세 미만이 청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너무 브로드하게 법에서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이 법에서 청년의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 가지 혼선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농식품부가 이 법률을 운영하면서 청년을 어떤 내용으로 한계를 정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면 이 법에다가 그 내용을 정해 주는 것이 입법적인 내용으로는 옳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춘식 위원 차관님, 여기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에 보면 지원 대상에 농촌 청년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농촌 청년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청년들이라고 규정할 사람들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가도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폭넓게 지원이 돼야만 그 효과가 달성되는 건데 지금 연령만 따져 가지고 34세다, 40세다 하다 보면 오히려 이

취지와 달리 가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현재 우리 농촌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 어떤 연령의 분포로 들어와 있는가도 한번 보시면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어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실제로 35~40세까지의 청년들이 가장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34세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지원 효과가 없는 거지요.

이런 걸 한번 실태 파악도 해 보시면서 어느 연령대가, 청년이라는 건 우리가 폭넓게 규정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적당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지원책이 나오는 것이 바로 청년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보시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따져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보류하시자는 말씀인 거예요?

○최춘식 위원 이게 오늘 적당히 잘 안 된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정확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런데 조금 솔직한 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어찌됐든 대부분의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 몇 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줄 거냐라는 부분은 현재 대부분의 상황도 사업시행지침에서 그 부분을 정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지침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가장 적합한 지원이 어느 정도 나이가 적합하겠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정하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을 만약에 법률에서 총괄적으로 정해 놓으면 사실은 사업시행지침에서는 그 부분을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춘식 위원 융통성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되게 구체적인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나에 따라서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넣을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구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융합법이나 아니면 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서 연령을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넣는 건 그렇게 썩 적합하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차관님, 제가 이 얘기는 아니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청년 나이랄까 연령을 명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구체적 사업하면서 특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최춘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대로 대개 그렇게 하면 예를 든다면 도에서 온 청년들, 새로 온 청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특혜를 주는 형식으로 가면 보통 39세 미만으로 가겠지요. 이렇게 가겠지요. 그러면 저희가 스마트팜을 하든 뭘 하든 정책자금을 줄 때 여기에 집중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이원택 위원 있을 건데, 불과 몇 년 전에 청년이었던 40대 또 50대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게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그 안에서 갈등 구조가 발생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맞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우리 농촌에 돌아오는 사람들, 농촌에 오는 사람들, 청년을 포함해서 40대에 오든 50대에 오든 귀농을 하든 첫 진입 단계, 정착 단계 또 성장 단계 이렇게 좀 단계를 만들어서 농업 성장 사다리라고 할까요, 농업 성장 사다리 체계를 만들어서 누가 오더라도 납득이 될 수 있는 지원체제들이 정리가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지금 농업계 내에 갈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농업 자체로의 성장 사다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농업을 매개한 기업 활동이라든가 협동조합 활동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아까 그런 문제의식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사업이 그런 연령 간의 갈등이 좀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좀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현장에서 보면 지금도 청년과 관련된 대상이 어디냐 여부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갈등도 있고.

그런데 입법적으로, 이 법에서 예를 들면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내용은 별도로 뒤따른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각 법에서 명확하게 해 놓지 않고 행정에서 나름대로 지침 하면서 구체화하겠다 하면 그 자체가 사실은 갈등을 더 유

발합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입법적으로 해결해 줘야 현장에서 집행하는 그룹들이 이 법에서 우리는 청년을 뭘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관련된 내용을 입법적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지…… 행정하면서 임의적으로 기준 정해 가지고 지침에서 하는 내용들 이 부분은 대부분 법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실제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만약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다음에 준비된 내용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정부 측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우리 지역에서 보면 읍 단위 청년들하고 면 단위 청년들이 달라요. 면 단위로 가면 청년이 거의 한 60세 이렇게 돼야 청년 취급받고, 이게 상황이 그래서 청년을 몇 살로 할 것인가 이것 정하기가 정부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듭니다.

그렇지만 또 법에서는 또 정확히 규율할 것은 규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잘 유념해서 정부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 법률안은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오후에 한 번 더 하든지.

(「예」 하는 위원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2시간이 넘었는데 12시가 됐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오후 1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어기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 심사과정에서 잠시 보류된 농약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차관께서는 윤준병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농약 시험성적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농약관리법과 관련된 규정을 조금 다듬어서요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농촌진흥청장은 품목 등록을 한 농약을 그 등록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그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취소를 하거나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그 조항과 관련해서 11조 3항의 단서를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품목 등록의 유효기간 중에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밝혀진 품목에 대해서는 차기 재등록 시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윤준병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농약관리법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춘택**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제4권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료의 유통기한 준수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령은 사료 판매 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식품위생법 등과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 등의 판매 및 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을 현재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사료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보호 및 사료의 안전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개념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료는 식품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또한 사료에도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는 도입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또 이에 적절한 시설 기준 마련 등의 선행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개정안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 시행에 관련해서는 법률 시행에 관해 주지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 후 6개월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소비기한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소비기한보다는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소비기한은 보통 품질 유지기간의 한 80~90% 정도를 의미하고요. 유통기한은 보통 품질 유지기간의 한 60~70% 상당의 기간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 현재 사료 같은 경우에는 소비기한의 설정보다는 유통기한의 설정이 조금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춘식 위원** 차관님, 여기 문구에서 ‘보관·진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개정안이. 진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는데 보관 같은 경우에 적절하게 통제가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통제라 하시면 단속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최춘식 위원** 그렇지요. 여기 지금 그걸 못하도록 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그걸 여기면 처벌이 따르는데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적절히 점검할 수 있느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일단 사료 관리 차원에서의 보관을 단속……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춘식 위원** 할 수 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단속하는 분들이 사실은 모든 영업장, 모든 보관 진열장 이

런 부분을 다 100% 매번 단속을 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업체가 그 사료를 보관하는 곳 그다음에 판매하는 곳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진열하는 것에 대해 가지는 금방 단속이 될 텐데 보관은 창고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보관도 뭐……

○**최춘식 위원** 그래도 단속할 수 있다 이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큰 문제 없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의결은 잠시 보류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제19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춘택** 6페이지입니다.

경주마 등록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인데요.

작년 6월 제주경마장에서 이례적으로 경주마가 바뀌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마사회는 무효 처리된 경주마에 대해 투표한 고객들에게 구매금을 반환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경주마 등록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경주 전 출전 경주마 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내용입니다.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등록 방법 등과 개체식별시스템의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매우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부령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마사회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칙 시행과 관련해서는 이런 세부 운영 관리 규정에 대한 정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 후 6개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저희들도 기본적인 이 규정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공포 후 6개월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은 잠시 보류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2항까지 이상 3건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춘택** 심사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수의사법상 위탁 지정 등을 통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두 개정안은 적용 대상과 적용 벌칙 범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재갑 의원안을 보시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적용 대상과 적용 벌칙 범위를 뇌물죄라고 했습니다만 윤준병 의원님 안은 이에 더하여 수의사 국가시험,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측정 업무까지 확대하고 있고요. 또한 적용 벌칙 범위도 뇌물죄 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지고요.

다만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보면 현행 법령에서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공공기관, 관계 전문기관 등에 대해서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준병 의원님 안처럼 적용 대상을 포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수의사 국가시험, 검사기관·측정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개정안에는 없습니다라는 수의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업무, 진료비용 등 조사·분석 업무 등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용 벌칙 범위에 대해서도 보면 수의사 국가시험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뇌물죄 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추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6페이지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동물의료 육성·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물의료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고 동물의료 체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통상 종합계획인 경우에 시행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8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 부분은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허은아 의원안의 경우에 동물의료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이 부분은 하위법령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11쪽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윤준병 의원님 안에 전문위원께서 추가해 주신 수의 및 공중위생,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진료비용 등 조사·분석 업무 이것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벌칙의 범위에 대해서도 뇌물죄 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6쪽은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이고요.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내 주신 바와 같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면 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구요. 그 밑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도 전문위원 수정의견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쪽의 부칙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항은 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요. 동물의료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이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24항,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 한우산업 기본법안 또 25항부터 29항까지 농어업회의소법안이 주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법안은 공청회를 하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이원택 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상정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심의는 않는 거고 그러면 공청회 후에 다시 이걸 여기서 심사하는 건가요?

○소위원장 어기구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두 가지 법안 다?

○소위원장 어기구 예, 두 가지 법안을 그렇게……

○이원택 위원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좀 명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청회 대상인데 전체회의 공청회입니까, 소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저희 법안소위 공청회……

○윤준병 위원 법안소위 공청회로?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날짜도 정하시지요.

○소위원장 어기구 그러지요.

그러면 최춘식 위원님, 오늘 날짜를 정하자고 그러는데……

○최춘식 위원 나 혼자 정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요? 지금 며칠날 있습니까, 날짜가?

○소위원장 어기구 우리 전체회의가 27일 날 있잖아요. 이 전체회의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지요.

○윤준병 위원 오후에?

○소위원장 어기구 오후에 할까요?

○윤준병 위원 준비해야 되는 데 최소한 얼마 걸려요?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행정실장, 기간 얼마나 걸려요? 사람 섭외도 하고 이래야지……

○행정실장 유규영 패널 섭외나 그분들한테 자료받는 시간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저희의 입장은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정도……

○이원택 위원 7월 초로 해야겠네.

○행정실장 유규영 7월 초 정도에 해 주시면 준비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 2주면 7월 6일이네요.

○소위원장 어기구 한 7월 4일 정도 안 됩니까? 7월 4일 정도 어때요, 위원님들?

○윤준병 위원 7월 4일, 저는 좋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최춘식 위원님, 7월 4일 정

도, 빨리 해 버리지요.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최춘식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물어봐야 되니까 여기서 발언할 게 아니라 상의 좀 할게요.

○소위원장 어기구 상의해서요?

○최춘식 위원 예, 제가 그러고 나서 간사님 통해서 알려 드리는 걸로……

○소위원장 어기구 예, 그러면 7월 4일로 잠정하는 걸로 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 상의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어기구 예.

○이원택 위원 7월 4일 날 한다면 오전에 좀 해주십시오.

○소위원장 어기구 오전에?

○이원택 위원 예, 오후에는 제가……

○소위원장 어기구 아니, 법안이 2개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잡아야 될 것 같아. 오전에 한 섹션 끝나고 오후에 한 섹션 해서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이원택 위원 왔다 갔다 해야겠네.

○윤준병 위원 잠정적으로 7월 4일 날 하시고 최춘식 위원님이나 국힘에서 위원님들……

○이원택 위원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하게 되면 한우산업법을 오전에 해 주시고요……

○최춘식 위원 예, 일단 간사님들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되니까.

○소위원장 어기구 예, 그렇게 7월 4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알았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인중 차관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하시겠다는 양해를 구하셨고 이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이 대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과 32항, 이상 2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춘택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자료 6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법, 법률안의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산림복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연간 한 300ha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산림복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자생식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들은 자생식물에 대한 종자 공급체계 또 이에 필요한 각종 기관 지정 및 행정절차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10년마다,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각각의 계획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행계획은 충실하게 그러한 사업들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입법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사업은 산림복원 사업이 종료된 후 최소 10년 이상 기간에 대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산림복원 사업이 증가 추세에 있고 따라서 사후 모니터링 물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개정안처럼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범위를 현행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및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 시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첫 번째, 산지보전협회 관련된 부분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 제3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6페이지입니다.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그 밖의 위반행위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와 함께 시정 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제재수단도 함께 규정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벌 부과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해당 기관에 대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넷째, 모니터링 기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섯째,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방금 말씀드렸던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림복원지원센터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산림청장이 산림복원 관련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및 해당 센터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생식물의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자생식물의 보급·확산을 통해서 산림의 생물다양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그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생식물의 종자를 제2조 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로 정의할 경우에 자생식물의 종자는 산림용 종자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생식물에 대해서는 제42조의9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로 수정하여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급센터의 지정취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경우와 같이 행정절차 및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사립수목원 또는 종묘생산업자에게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목원 인용조항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개정안은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 생산하는 자에 대한 손실보상 및 준용되는 규정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용되는 법 제17조 2항 각 부분의 용어에 대한 수정은 별도로 필요해 보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는 자는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유통하려는 자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생식물 종자의 수집·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이고요. 다만 개정안처럼 자생식물 종자를 산림용 종자와 달리 정의할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29페이지입니다.

현행은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산림용 종자 등의 출하 시 품질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안은 자생식물 종자의 경우 품질인증 외에 품질표시까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범자의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품질 표시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개정안은 유사 표시 등 인증 관련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및 이에 연계되는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인증취소의 내용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증받은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신설하되 이력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복원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복원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도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벌채 시 생태 또는 재해방지 등을 위

해 남겨지는 구역의 수목 가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산림 소유자에게 벌채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관련된 내용은 이미 지난해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수정의견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인용조항 부분은 개정안대로 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4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위법령 개정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하되 방금 말씀드린 민형배 의원안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를 마쳤으나 잠시 의결을 보류했던 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수의사법(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차장 임상섭 산림자원법 개정사항은 전문위원님 수정의견과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우리 위원님들, 개정안 양이 많은데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면……제가 할게요.

○소위원장 어기구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준병 위원 모니터링 기관 지정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중에 지정취소하는 건 있잖아요. 여기의 지정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 그래서 거기에는 절차적으로 청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청문 규정이 명시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산림복원정보체계 구축 이 내용도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저는 산림복원과 관련된 내용을 산림청에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산림복원정보체계 구축을 별도로 않는다 하더라도 산림자원의 정보화 내용에 산림복원과 관련된 정보도 산림자원정보체계 내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규정을 두든지 해서, 보통 산림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자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산림복원이 간과되거나 경시되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 산림청 자체 내에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지금 개정안에 들어 있는 산림복원정보체계 구축 조항을 거기다 넣든지, 그대로 살리든지 아니면 지금 33조 내용에다가 복원과 관련된 정보라고 해서 산림자원 체계 내에 복원과 관련된 내용도 예시를 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림청차장 임상섭 기관 취소 청문과 관련된 사항은 지금 법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윤준병 위원 그래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예.

○전문위원 공춘택 소위 자료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윤준병 위원 37페이지? 오케이, 봤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산림청차장 임상섭** 정보체계가 산림복원 관련 된 것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률과 함께 더불어서 차근차근히 정비를 해 나가는 단계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보체계와 관련된 것도 복원 정보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산림자원 정보체계가 있으니까, 산림자원법이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산림복원과 관련된 정보라고 하는 내용을 예시적으로 같이 병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조문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예시된 내용의 열거를 해 두면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어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산림청차장 임상섭** 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윤준병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이원택 위원** 차장님, 5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세 가지가 추가로, 크게 2개 기관이나 단체가 늘어나잖아요.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23조 2항에 따른’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을 예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기관이 해당되는지?

○**산림청차장 임상섭**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문기관은 산지보전협회하고 치산기술협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하고 산지보전협회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치산기술……

○**이원택 위원** 그 밑에 것.

○**산림청차장 임상섭**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통제선 특별법에 따른 것은 치산기술협회인가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산지관리법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된 산지관리전문기관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문기관하고 똑같이 때문에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지금 삭제되는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다음에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어느 범위 정도 생각

하고 있나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지금 3개 기관 정도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할 것은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 개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관련된 단체가 한국산림복원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한국산림복원협회?

○**산림청차장 임상섭** 예.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하나 정도 검토하는 건가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예.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된 조직이나 인원 같은 것들을 규정해서 거기에 맞는 범위라고 하면 더 추가로, 사업 모니터링해야 될 양에 따라서……

○**이원택 위원** 앞으로 추가할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목원관리원, 산지보전협회, 치산기술협회 그다음에 아까 산림복원협회 이렇게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예, 그 정도.

○**이원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춘택** 위원장님,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공춘택** 심사자료 38페이지입니다.

벌칙 관련된 부분인데요.

개정안은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 인증이나 품질 표시에 관한 의무 위반을 할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벌금형 상한액 수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거짓으로 인증 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인증 표시를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품질 표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에 이와 연계하여 개정안의 77조 1항 제9호는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별칙 규정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과 제3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춘택 자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탄소흡수원 정보·통계에 산림공간정보 및 4차원 데이터를 통합하여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는 산림경영에 관한 정보 및 통계를 포괄한 개념이기 때문에 수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 탄소흡수원 정보체계를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로 단순히 용어를 변경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산림경영 활동과 관련한 시간적·공간적 이력정보를 명확히 표현하는 한편 이력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나 유형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제상 자료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52페이지입니다.

업무 위탁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행함으로써 산림탄소정보 관리·활용 품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법 37조 2항에서 일반적인 위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별도로 위탁 규정을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은 별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개정안 내용도 그에 대응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 또한 하위법령 마련 등의 필요에 의해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차장 임상섭 탄소흡수원법 개정사항은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과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위원님들 말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차장님, 탄소흡수원 하면 이게 꽤 범위가 넓은데 지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산림에 국한되니까, 외연이 탄소흡수원이 여러 영역인데 그 내용까지 다 포괄합니까?

○산림청차장 임상섭 탄소흡수원 이 법에서 탄소흡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만 관련된 내용이고요. 학술적으로도 탄소흡수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96~98% 정도는 다 산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준병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흡수원이 농업도 있고 또 습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흡수원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산림 위주로 탄소흡수원을 운영해 왔던 것은 맞는데 앞으로 가야 될 탄소흡수원 하면 외연이 훨씬 더 넓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른 내용까지 포괄하거나 그러려고 그러면 산림탄소흡수원 이런 용어도 적절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산림청차장 임상섭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용어 사용할 때 산림탄소흡수원으로 제한해서 이렇게 명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산림청차장 임상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정의에 탄소흡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윤준병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할 때 산림이 이제 탄소흡수원의 주였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외연을 넓혀 가야 될 상황이라서 각기 다른 부분도 그 내용들을 더 구체화하고 또 그것을 조장하고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예.

○**윤준병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산림을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명명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산림청차장 임상섭** 그것은 농식품부도 있고 해수부도 있고 저희도 있고 여러 부처가 있으니까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준병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또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과 35항, 이상 2건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춘택** 57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문화재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만 허용이 되고 문화재 발굴행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처럼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안호영 의원안이 발굴 허용 대상을 해당 조문 끝에 열거하고 있어 권성동 의원안보다는 해석상 명확해 보이므로 안호영 의원안으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는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외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지고요. 다만 공표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시행일 역시 하위법령 근거 등을 이유로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차장 임상섭** 백두대간법 개정사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공표하고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는 내용 그리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허용행위를 산지관리법이나 자연공원법 및 농지법과 유사하게 문화재 복원뿐만 아니라 발굴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과 3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춘택** 소위 심사자료 제7권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산림기본계획 수립·변경 또는 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앞서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및 산림청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의 자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비상설 회의체의 구성·운영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기본계획

등의 실효성 및 이행력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비상설 회의체인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정의견을 수용 시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차장 임상섭 산림기본법 개정사항은 산림기본계획 수립 시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차장님, 심의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정책협의회는 의견을 듣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예를 들어서 조직을 운영할 때 위원회를 두어서 나름대로 의견을 듣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좀 정치하게 예를 들면 논의도 하고 전문가의 식견도 좀 더 조율하고 이런 내용이 필요하고요. 대신에 조직이 안 늘도록 하거나 사실상 필요 없는 위원회가 이름만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활용되는 것은 좀 방지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위원회를 자체하자 이런 건데 협의회나 심의회나 어차피 구성해서 설치돼서 운영되는 게 같다면 굳이 그걸 명칭상으로 꼭 협의회 이렇게 해서 운영해야 될 당위성이 뭐 있나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우리 정부 의견에서 위원회를 조금 줄이는 방향에 있고요.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위원회를 줄이자 하는 것까지는 좋겠는데 위원회나 협의회나 명칭만 안 쓸 뿐이지 실제 그 내용이 비슷한데 굳이 그것 명칭 회피하려고 심의회는 안 쓰고 협의회라고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이 의견이?

○산림청차장 임상섭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개정안에 산림정책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었는데 산림기본계획이 수립됐을 때나 변경됐을 때 그리고 평가할 때 의견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원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산림기본계획이 기본법상 2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도 저희들이 보면 5년 단위 내지는 10년 단위로 변경을 해서 이걸 상설기구로 운영하는 게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해서 협의체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윤준병 위원 오전에 농식품부 할 때 보니까 농식품부 내에 정책협의회를 두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농식품부 내에 하나 두고 밑에 각 실·국별로 협의회도 두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건데 산림청도 마찬가지로입니까?

○산림청차장 임상섭 예, 농식품부와 비슷……

○윤준병 위원 그러면 일단 하나를 예를 들면 산림에 산림정책협의회가 하나 있으면 다른, 예를 들어서 심의회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 그 내용으로 위상을 그렇게 자리매김할 예정인가요? 이것도 이것 하나만이 아니고 산림청 내에 각기 위원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위원회 기능을 줄여서 이쪽의 정책협의회에서 나름대로 통합해 가지고 그런 기능을 운영하는 이런 정도 수준의 정책협의회입니까, 이게? 아니면 단순히 이 기본계획 자체만을 협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입니까?

○산림청차장 임상섭 지금 이 개정안에 있는 것은 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의 후자에 가깝습니다. 전자에 관련된 것은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의 법률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한 2개 정도로 줄일 계획이고요. 지금 이 법안에서 검토되고 있는, 개정안에서 되고 있는 정책협의회는 산림기본계획이나 지역계획 수립·변경, 평가 관련된 내용들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준병 위원 저는 만약에 정책협의회를 그런 취지로 둔다 그러면 오히려 후자처럼 운영해야 여러분들이 소위 행안부의 현재 지침, 위원회를 줄이고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지침에 부합한다. 단순히 심의위원회를 정책협의회라고 이름만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다,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협의회라는 명칭을 제대로 소위 행안부 지침에 맞는 조직체계, 위원회의 기능을 가능하면 통합하고 유명무실한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하려고 그러면 이 내용도 그런 큰 틀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어때요?

옆에 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이원택 위원 제가……

차장님, 지금 이 부분을 보면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예.

○이원택 위원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이 법의 취지는 어떻든, 20년 단위든 5년에서 10년 단위의 변경이든 간에 이런 산림정책심의위원회의 전문가들 의견을 꼭 들어라, 반영해라 이런 취지잖아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예.

○이원택 위원 그런데 들을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 이걸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의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4개 위원회 중에 2개는 조금 그렇고 2개가 남을 것 아닙니까? 그 2개의 위원회 중에 이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없습니까?

○산림청차장 임상섭 다른 4개 위원회는 약간 개별법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이 위원회는 기본법이라든지 지역산림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산림기본계획이라든지 지역산림계획이라든지 약간 총괄적인 것이라서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이 협의체나 이 위원회가 더 제일 큰 역할을 합니다.

○이원택 위원 그렇다면 조금……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것은 우리도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 논의하고 있으니깐. 그런데 이걸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들이나 현장의 의견을 꼭 듣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데 협의회를 만들어서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러면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그 법적 위원회로 이 기능을 거기에서 하면 되는데 그게 중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예.

○이원택 위원 이걸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어기구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정훈 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이네요.

지금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정책심의 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산림청차장 임상섭 7개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7개 있는데 그걸 2개 정도로 지금

통합합니까?

○산림청차장 임상섭 7개 중에서 4개를 2개로 줄입니다.

○신정훈 위원 그런데 정책 심의 주제들 중에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부분이 어찌 보면 산림청 업무의 가장 큰 그림, 밑그림, 핵심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그 심의하는 위원회를 위원회가 아닌 협의회로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취지로 말미암아 조금 부족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산림정책의 기본 밑그림을 그리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심의위원회가 좀 정상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청차장 임상섭 이원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바꾸는 것은 저희들은 필요하다, 그렇게도 운영할 수 있겠다고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위원회로 바꾸고 하는 것들은 또 정부 전체적인 협의도 있어야 되고 또 행안부하고 협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조항은 조금 보류를……

○신정훈 위원 임의조항이나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정부가 민간 의견들, 국민들의 의견들, 전문가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비중 있게 또 의미 있게 이걸 다루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해야 된다는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상 있고 비중 있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이게 제가 낸 법안인데요.

지금 산림기본계획 수립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지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20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이게 20년 만에 한 번씩 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보통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원래 산림기본계획은 이

법률 개정 전에는 10년 단위로 하고 5년 주기로 변경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 산림사업이라는 게 5년, 10년 가지고는 짧다고 지적들이 있으셔서 이걸 20년으로 바꾼 지 한 2년, 3년 정도 됐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그래요.

아니, 모든 정부 계획이 다 5년마다 수립이 되는데, 20년이면 강산이 몇 번씩 바뀌는데 20년 만에 한 번씩 수립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라고 제가 법안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정부 지침이 위원회를 다 통폐합하고 없애라고 그러니까 협의회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는 것 같고.

○이원택 위원 간사님이 의무조항을 다는 걸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통과할까요?

○소위원장 어기구 좋아요.

행안부하고 다시 또 상의를 하고 그러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협의체로 하긴 하되 의무조항으로 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윤준병 위원 하나만 더 확인 좀 하고요.

우리 기본계획은 20년이고 그다음에 그 하위계획은 뭐예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지역계획이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지역계획은?

○산림청차장 임상섭 지역계획도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다음에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그런데 대신 변경은 저희들이 5년이나 10년 단위로 하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수시로 하면, 심의야 수시로 이루어질 때마다 해야 될 거잖아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예.

○윤준병 위원 그러면 산림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 하위계획이 지역계획입니까?

○산림청차장 임상섭 예, 시도 단위, 지방청 단위……

○윤준병 위원 시도 단위 기본계획도 20년?

○산림청차장 임상섭 예.

○윤준병 위원 그다음에 시행계획은 없어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시행계획은 각 사업 분야

별로 나눠져서 하나까요 10년 단위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20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나 이렇게 하면 이걸 진짜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그냥 가지고 있는 방향제시에 불과한 내용이지 우리가 소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정돈된 또 조합된 이런 나름대로 산림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그걸 기반으로 하기 위한 비전 제시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 기간을 줄이거나 하되 5년 연동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계속 미래를 내다보고 눈앞에 있는 내용을 연동화시켜 가면서 계속 가고 그 연동화되는 내용도 실제 이런 정책적인 위원회의 심의라든지 의견을 듣는 이런 조직체계를, 계획체계를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20년짜리 해 놓고 하위의 지역 단위도 20년이고, 그거야 한 번 만들어 놓고……

또 행정은 그렇잖아요. 변경 요인이 있는데 20년짜리 계획이니 20년 계획체계를 뒷받침하려면 용역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견 수립해야 된다는 이유로 부분적인 수정도 또 안 해요. 산림청장이 필요하면 해.

나는 이런 계획체계는 올바르지 않은 행정체계를 유발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체계 자체도 한번 점검을 해서 계획체계 자체를 바꾸거나 좀 조율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검토해서 그 내용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차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20년 단위로 하는 것은 산림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좀 부족했는데 10년 단위로 하다가 장기적으로 보자 그래서 20년으로 됐고, 대신 중간에 변경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서 주기는 20년이지만 사이에 변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윤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본법 관련해서 검토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차장님, 그렇게 기간을 5년, 10년으로 하다가 20년으로 변경했을 때는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산림청기획조정관 이미라 기획조정관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기본법을 20년으로 할 때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종합계획을 20년 단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국토공간의 63%인 산림 역시 전체 국토나 환경하고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20년 단위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산림의 기본계획은 20년으로 해야만 이것이 정말 적당한 계획이 되는 것이고 그게 맞다라는 그런 당위성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것에 연동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 임목한 나무가 수종이 자라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든가 또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른 어떤 개발사업에서도 여러가지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청차장 임상섭 맞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분야 계획 전문가분들 의견도 10년 단위, 5년 단위라는 것은 산림 장기적인, 100년 단위로 수확을 하고 50년 단위로 수확을 하는 시스템에서 조금 짧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20년 단위로 했고. 또 다른 국토나 환경 분야에서도 한다고 그래서 그걸 연동해서 했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수정·변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 조항 체계가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원택 위원 아까 발의하신 어기구 간사님께서 하여야 한다면 수용하면 통과시키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소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들어야 한다’로 다 바꾸고 일단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번 띄워 보고 잘못하면 또 손을 보도록 하지요.

오늘은 그 정도 하지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윤준병 위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39항까지 이상 3건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춘택 자료 70페이지입니다.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창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산림치유 분야의 연구개발·보급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산림치유 창업 지원 등에 관한 부분은 개정안을 보면 산림치유 분야 예비 창업자 및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산림치유 관련 기술을 보급하거나 컨설팅을 통해 관련 분야의 창업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 역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산림치유시설, 산림치유서비스 등 용어가 부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처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숲길기본계획에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장기간에 걸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이라든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8페이지입니다.

국가숲길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 위탁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숲길의 운영·관리 주체인 산림청장이 해당 업무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민간 부문에 위탁하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위탁을 통해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국가숲길의 체계적인 운영이나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수탁기관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개정 입법의 취지, 현행 법령상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이나

업무 범위, 산림청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위탁업무의 범위는 하위법령이 정하도록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수탁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도 일반 입법례처럼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86페이지입니다.

시행일 관련해서는 하위법령 개정 등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소병훈 의원안의 숲길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미 2차 숲길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경과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희용 의원안의 국가숲길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는 개정안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차장 임상섭 산림휴양법 개정사항은 산림치유 연구개발하고 보급 그리고 산림치유 창업 지원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고요. 또 국가숲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0항과 41항, 이상 2건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춘택 자료 88페이지입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채석단지의 채석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통과가 됐고 이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환경피해나 지역주민의 피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사항입니

다. 세부적인 내용은 9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정안은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지역에 비해 대규모인 채석단지에 대해서는 채석기간을 최대 2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석재 생산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회의에서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산지관리법 개정사항은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우리 위원님들, 지난번에 논의했던 거니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수정의견이 뭐예요?

○전문위원 공춘택 소위 자료를 보면 기존 10년을 20년으로 늘리는 부분으로 수정의견은 되어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이……

예전에 얘기했었던 내용이, 우리가 채석허가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채석허가 이후에 수허가자가 채석과 관련된 일련의 의무라든지 대민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실제 허가를 받고 나면 그 이후에는 허가기간 내내 수허가자인 사람들이 사실상 갑의 위치에서 모든 걸 대한다. 그러다 보니 환경피해나 대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허가기간을 짧게 주고 그 기간 내에 소위 석재 보급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고 이후에 그게 적절하게 운영됐는지를 제대로 점검한 이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지 이거를 늘려서 하는 것은 현재 석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인허가절차상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 이게 전체회의 때 지적된 내용이기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야지 그냥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기간은 10년으로 돼 있고 채석단지의 채석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채석단지는 규모화가 돼 있고, 광역자치단체에 쭉 의견을 조사해 보니까 토석채취허가를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고, 오히려 채석단지의 채석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물어보지는 않고 급해서 우선으로 물어봤는데 대부분 찬성하는 쪽이 많습니다. 사유를 물어봤더니 토석채취허가는 관리라든지 하기가 어려운데 채석단지는 규모화가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고 오히려 관리가 더 잘된다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또 소규모 난개발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규모화 있게 채석단지를 운영해서 중장기적으로 하면 투자하는 업체 분들도 20년이라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원택 위원 다른 의견 없으면 현행대로 그냥 10년 하시지요.

○최춘식 위원 아니, 잠깐.

10년, 20년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산림보존에 대해 관리하기가 어렵고 통제하기 어려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반대 입장이고요.

왜냐면은 어떤 사업장이든 가 보면—이 사람들 하고 있는 분들을 내가 편을 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몇십 명씩은 되거든요. 그러면 항구적인 자그들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20년을 해 주고 나서도—저는 사실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거기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들어가고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해 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건 주민들의 생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기간으로 자르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차장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화해서 규모 있게 채석을 하게 되면 관리가 좀 쉽고요. 소규모로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는 집약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든 생산비라든지 투자비 같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자체에서 관리할 때도 단지 개념이면 여러 군데 소규모보다는 단지 중심으로 관리하기도 좀 쉬울 것 같고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강한 제재수단을 강구해 가지고 규정대로 잘하는 데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못 하는 데는 거기에 대해 제재가 들

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윤준병 위원 현재 10년을 20년으로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예.

○윤준병 위원 늘려야 될 당위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년을 10년으로 줄이겠다고 그러면 사정 변경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도 수허가자들이 온갖 문제를,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는 게 현장의 실상이고 또 복원도 제대로 안 해서……

산림청에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세요. 사실 4차로 이상 국도나 이쪽에서 석채채취장이 안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보이는 게 일상이고, 그건 다 복구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난개발이나 이렇게 지금 실상인데 이걸 가지고 업자들에게 20년을 더 안정적으로 석채 개발하라고 하면 현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 관리를 더 못 하게 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나는 연장해야 될 당위성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연장하자고 제안된 거다 이렇게 봐요. 이건 꽤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예전에 20년짜리인데 10년으로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기존에 했던 내용 이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재 10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걸 20년으로 늘려 주자는 것은 현장의 업자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현장의 민원이나 그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적 보존 차원에서 보면 역행하는 거다, 오히려 산림청이 거꾸로 간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석채가 필요하니까 이걸 좀 해 달라고 하지만 산림청에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원택 위원 제 의견은 이렇게입니다.

석채산업을 진흥하자 이런 취지는 공감 가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년으로 연장하지 말고 10년 후에 재연장할 때 10년 동안 지켜야 할 각종 규정들, 조건들을 잘 지킨 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10년 연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평가받지 않으면 정말……

예를 든다면 규모 있게 한다고 해서 주변의 규정이랄까 민원이랄까 이런 걸 잘 처리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작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이익을 놓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0년 재연장할 때 10년 동안 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재연장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규제를 면제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보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최춘식 위원 차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가 토석채취 현장을 한번 가 보면요, 물론 저희 지역에 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 보면 규모가 작든 크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복구계획 다 세워 가지고 있고 거기에 예치금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에 들어올 때, 그 현장에 작업장으로서 규모를 갖추고 들어올 때는 거기에 막대한 준비사항들이 있어요. 장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력 또 여러 가지가 하여튼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장만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서 그 작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업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20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작업하게 하고 그사이에 어떤 불법사항이라든가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고 잘못됐을 때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역 내에 저희들이 봐도 복구 현장을 가 보면 복구 참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주 대표적인 게 포천시에는 아트밸리 같은 경우인데 거기는 폐석산을 이용해서 지금 관광지를 만들어 놔놓아요. 이런 것도 다 복구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보강책을 마련한다면 저는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그리 불합리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어기구 아니, 이 주제에 관해서 논의했다가 전체회의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이렇게 논의하는데……

중재안으로 15년 하면 어때, 15년, 그건 안 돼?

○윤준병 위원 연장은 안 되고요. 보류하시지요,

보류하시든지 받든지.

○소위원장 어기구 아니, 가만 있어 봐. 그동안 이것 한 번 전체회의에서 빠꾸 맞고서 위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얘기 안 하셨어요?

○산림청차장 임상섭 예, 설명을……

○소위원장 어기구 이게 해외는 어때요? 해외는 몇 년씩 해 줘니까, 채석기간을? 해외 다른 나라들.

○산림청산림복지국장 강혜영 해외는 좀 길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짧게 하는 데도 있고 길게 하는 데도 있겠지.

○산림청산림복지국장 강혜영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좀 더 길게도 많이 하고 있어서 어떤……

○소위원장 어기구 길게도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차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최춘식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잘 관리한다는 조건하에 장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장점도.

○윤준병 위원 안 됩니다. 보류하든지 10년 원안으로 하든지 둘 중의 하나 결정하십시오.

○소위원장 어기구 오늘 정리하지요. 이걸 뭘 다시 또, 전체회의 갔다가……

○윤준병 위원 이후에 지금 최춘식 위원님 말씀 주신 이런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다시 하든지, 연장하는 것은 추후에 하시고.

○소위원장 어기구 다시 빠꾸도 그렇고……

○이원택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것은 10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그래요?

최춘식 위원님 이렇게 하지요. 이것 10년 합시다, 그냥.

○최춘식 위원 아니, 내가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내 의견을 많이 표출한 건 아닌데, 이게 사실 전체회의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온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어기구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위에서 의결해서 전체회의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한두 분이 말씀하신다 해서 다시 돌려보내 가지고 재의결하라 하면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소위원장 어기구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최춘식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윤준병 위원 아니, 잘못됐으면 교정하는 것이지요. 그게 무슨 소위 와서 절대 불변입니까?

○소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 다시 갔다 온 거니까 오늘 마무리를 하지요. 저희 그냥 원안대로

합시다. 10년으로 하지요, 10년으로 하고 또 보고……

○최춘식 위원 아니, 그건 우리도……

○윤준병 위원 그러면 보류하시지요. 보류했다가……

○소위원장 어기구 보류해서 또 언제 논의합니까.

○윤준병 위원 사실은 그때 전체회의에서 10년으로 하고 의결하자 그랬는데 넘어온 거거든요.

○소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어떻게, 그냥 보류?

○윤준병 위원 의견 조율이 안 되면 보류하시지요.

○이원택 위원 보류해 주세요.

○소위원장 어기구 보류로요?

○이원택 위원 예.

○소위원장 어기구 최춘식 위원님 보류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예.

○소위원장 어기구 차장님, 마지막으로 보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차장 임상섭 저희는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장점이 많다고 판단했는데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소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장점이 많은 것을 충분히 이해 가게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것 납득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채굴업자들 보면 자기 것 다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한다는 보장하에 위원님들을 더 충분히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차장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한 안을 내놨으면 거기의 당위성을 주장해 주시고 하셔야지, 그래야 또 다 들을 것 아닙니까. 그냥 던져 놓고 ‘나중에 위원들 의결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려면 거기 왜 왜 제시는 겁니까, 도대체?

○산림청차장 임상섭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최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 별도로 수립해서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 아까 이원택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10년 하고 더 잘하면 연장해 주고 이런 안도 있고,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이렇

게 일이 벌어졌으면 찾아다니면서 다 설명을 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와야지 여기 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산림청에서 반성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 덕 흠	신 정 훈	안 호 영	어 기 구
윤 준 병	이 원 택	정 희 용	최 춘 식

○청가 위원(1인)

홍 문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권 영 진
전 문 위 원	공 춘 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 관	김 인 중
농 촌 정 책 국 장	이 상 만
정 책 기 획 관	박 순 연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송 남 근
농식품혁신정책관	윤 원 습
축 산 정 책 관	김 정 욱
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	이 상 호

산림청

차 장	임 상 섭
기 획 조 정 관	이 미 라
산 립 복 지 국 장	강 혜 영